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68

발의연월일: 2021. 6. 18.

발 의 자 : 추경호 · 강기윤 · 김석기

김예지 · 김용판 · 박성중

이종배 • 이채익 • 임이자

태영호 · 허은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재산세 세액을 공동소유자별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지분과 상관없이 과세대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항 중 "가액을 합산한"을 "가액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리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3조(세율적용) ①・② (생	제113조(세율적용)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	③
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	
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	
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u>가액</u>	가액을
<u>을 합산한</u> 과세표준에 제111조	소유자 지분별로 분리한
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	
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